

### 제3장 위원회가 추구하는 가치<sup>4)</sup>

#### <핵심가치>

- “인권의 보호와 증진”은 위원회가 지향하는 핵심가치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모든 인권이 보편적·불가분적·상호의존적·상호연관적임을 인정하며, 사회구성원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장을 위해 활동할 것이다

#### <운영가치>

- 독립성(Independence)
- 전문성(Professionalism)
- 다원성(Diversity)
- 투명성(Transparency)
- 책무성(Accountability)
- 합리성(Rationality)
- 예의와 헌신(Courtesy and Commitment)

### 제4장 전략적 접근: 핵심 업무 선정기준

#### 제1절 기준의 필요성

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다양한 인권이슈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일련의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향후 3년간 일련의 광범위한 인권이슈들과 인권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을 가진 위원회가 모든 인권

4) 위상발전기획팀의 검토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 위원회 구성원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공유되던 것들을 개념화하였다. 세부내용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위원회의 업무)

문제에 대응할 수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위원회가 관여할 핵심 업무영역들을 정해야만 한다.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일련의 일관된 선정기준에 따라 여러 중요한 인권이슈들 가운데 어려운 선택을 할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업무의 효율을 위해, 즉 한정된 자원을 최선의 인권보호를 위해 배분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이는 본 업무계획기간 동안 위원회가 대응할 수 없는 인권이슈나 인권침해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위원회가 능력 또는 자원의 부족으로 특정이슈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해서, 해당이슈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원회와 그 직원들은 핵심 업무 선정기준의 모든 요소들이 철저히 검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제2절 선정기준

## 제5장 핵심 업무 영역

## 제6장 위원회 10대 전략목표

- 목표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
- 목표 2.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 목표 3. 차별시정을 위한 인프라 정비
- 목표 4. 인권예방기능과 현장성 강화
- 목표 5. 인권친화적인 권리 구제 서비스 제공
- 목표 6. 체계적인 인권교육 실시
- 목표 7. 인권 홍보기능 강화
- 목표 8. 국내외 인권관련 기관/단체/개인과의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
- 목표 9. 위원회 기능의 통합적 수행
- 목표 10.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접근성 제고

### 목표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

위원회는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외국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위원회의 주된 관심 영역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 시민적·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제 권리가 함께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이들이 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사회적 제약이 많다는 사실도 함께 인식하고 있다.

위원회는 향후 3년간 위원회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이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활동할 것이다. 이러한 위원회의 노력은 구체적으로 사회권 분야에 대한 개입역량 강화, 인권침해 예방 및 현장성 강화, 차별시정을 위한 인프라 정비,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인권교육 실시 등의 방법으로 구현될 것이다.

### 목표 2.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원회가 추구하는 인권이 국내법에서 보호하는 범위를 넘어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해야 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이는 대한

민국 헌법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령·제도·정책과 관행이 헌법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국내법이 정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국제 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제고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제도·정책 및 관행들이 국제 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제고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구체적으로,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권고와 그 이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극적 자문”, “주요 재판 및 입법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 협의 및 제도개선” 등의 형태로 구현될 것이다.

### 목표 3. 인권예방기능과 현장성 강화

일단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그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을 받게 되며, 회복에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고, 때에 따라서는 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위원회는 향후 3년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항상 인권 현장과 밀착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위원회의 이러한 인식과 노력들은,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현장 활동 강화”, “실태조사, 방문조사, 직권조사 등 기획조사 기능 활성화”, “업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실무차원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다.

### 목표 4. 인권친화적인 권리구제 서비스 제공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사 구제와 관련된 모든 행동들이 인권친화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인권친화적인 조사 구제 서비스라 함은, 인권 피해자들이 위원회가 자신들을 위해 해 주기를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는 모든 조사 구제 절차가 기존의 타 권리 구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방식과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목표 5. 차별시정 기능 강화

지난 해(2005)에 그동안 여성부, 노동부 등에 분산되어 있던 다양한 차별시정기능을 위원회로 일원화하는 조치가 있었다. 위원회는 그 조치로 인해 대한민국 내에서 차별시정에 관한 전담 국가기구가 되었다. 또한 위원회는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차별 문제가 주요한 인권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원회는 차별시정 전담 국가기구로서의 위원회의 지위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위원회의 차별시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원회의 차별시정 기능 강화를 위해, “차별 금지법 제정”, “차별 사유별/영역별 판단 기준 정립”, “조정기능 활성화 등 차별 피해자 구제방법의 다각화”, “차별 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체계 구축”, “차별 사유별/영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 목표 6. 체계적인 인권교육 실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인권의식이 제고되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인권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이는 파리원칙이 국가인권기구의 주요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로도 설명된다. 위원회는 향후 3년 동안 사회 구성원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 목표 7. 국내외 인권관련 기관/단체/개인과의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

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반 차별의식을 광범위하게 확산시키고 결과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권증진과 보장에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국내외 정부기관이나 비정부 기구 및 관계 전문과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오고 있으며, 인권시민단체들과 다양한 형태의 협력관계를 맺어왔다. 위원회는 향후 3년간 이들 협력관계를 보다 발전·심화시켜서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위원회는 주요한 협력대상에 국제인권기구, 주요국가의 국가인권기구, 지역 인권기구, 관계 국가기관, 인권시민단체, 인권 전문가 등이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목표 8. 위원회 기능의 통합적 수행

목표 9. 위원회 홍보기능의 강화

목표 10. 위원회의 투명성과 접근성 제고

## 제 2 부 전략적 계획

위원회는 위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3년간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할 것이다.

###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에 역점을 둔 인권정책

첫째, 위원회의 사회권 분야 개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 사회권 상황실태조사와 그 활용
- 핵심 사회권 영역에 대한 정책개발
- 인권영역 확장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

둘째,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 정부의 인권NAP 수립 권고와 그 이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극적 자문
-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협의 및 제도개선
- 주요 국제 인권논의에의 적극적 참여
- 인권침해 가능기관의 관행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 주요 재판 및 입법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

### 2. 인권피해자 만족도를 높이는 조사·구제

첫째, 인권친화적인 권리구제 서비스 제공

## 제7장 인권위원의 역할과 의무

#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민간초청 워크숍 개최 계획(안)

## 1. 워크숍 개최 필요성

- 발전기획안에 인권 전문가/단체 의견을 반영할 필요
- 발전기획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추진동력 형성
- 인권단체의 워크숍 개최 요구 수렴

## 2. 워크숍 개요

가. 일 시 : 11. 21.(월) 10:00 - 18:00

나. 장 소 : 서울 여성 프라자 (대방동 소재)

나. 참석 대상: 약 100명 내외

- 위원회 임직원 : 위원장, 참석희망 인권위원 및 직원
- 발전기획단(22명) : 단장(사무총장), 3개팀(업무전략기획팀, 위상강화기획팀) 팀장, 내부팀원 및 외부위원
  - \* 역량강화기획팀은 임무의 기술적 성격에 비추어 외부위원의 참가 필요성이 낮으므로 내부팀원만 참가
- 위원회 외부 : 참석희망 인권전문가/단체
  - \* 정책자문위원,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 인권강사단, 인권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 참석 희망 여부 조회

다. 워크숍 프로그램 : 붙임 참조



### 3. 소요 예산(추정) : 470만원

비 목	금 액	예산과목	비 고
○ 회의장 임차료	70만원	1111-212-201-01	*3개 회의장
○ 식사비	130만원(6,500원*100명*2식)	1111-151-202-01	*구내식당
○ 자료집 제작	100만원	1111-212-201-01	
○ 다과비	20만원	1111-212-204-01	
○ 국내여비	50만원	1111-151-202-01	*지방참석자
○ 기타회의 운영경비	100만원	1111-212-201-01	
합 계	470만원		

### 4. 향후 추진 일정

- 워크숍 개최 계획안 확정 : 11. 3.
- 워크숍 참가여부 조회 : 11. 4.~11. 14.
- 워크숍 참가자 확정 : 11. 15.
- 발전기획단 전략계획 초안 송부 및 의견조회 : 11. 14.~11. 21.
- 워크숍 개최 : 11. 21.

## 워크숍 프로그램(안)

시 간	진행내용	진행자
09:30~10:00	등록	직원 3명 배치
10:00~10:45 (45분)	위원장 인사말씀(5분) 기획단 설립 취지 및 경과보고(5분) 기획단원 소개(5분) 워크숍 일정 안내 전략계획 초안 발표(30분)	전체사회: 김형완 팀장 위원장 사무총장 사무총장 사회자 업무전략기획팀장(정책국장)
10:45~12:00 (1시간 15분)	질의 및 전체토론	진행: 정책국장
12:00~13:00 (1시간)	점심	
13:00~15:30 (2시간 30분)	제1세션 : 위원회 기능별 우선 과제 논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방안 △국제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 구축 방안 △인권침해 예방 및 현장성 강화 방안 △범 국민적 인권의식 고취 방안	*사회자/정리자 는 분임 에서 자율적으로 선정 *분임별 기획단 외부위원 1명씩 촉진자로 배정
15:30~16:00 (30분)	휴식	
16:00~17:30 (1시간 30분)	제2세션 : 인권위 위상 및 역량 강화 △인권위 위상 및 역량 강화 방안 △국내외 인권단체/개인과 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접근성 제고방안	"
17:30~18:30 (1시간)	저녁식사	
18:30~20:00 (1시간 30분)	분임토의 결과 발표, 전체토론 및 정리	진행: 정책국장 마무리 말씀: 사무총장

\*별첨문 : 1710에 제출 시한 & 위원회에 미치는 리 들은 각리 - 위원회의 개시  
 한 인권권영 리의 강제 세로 .

발전기획단 업무전략기획팀  
6차 회의

2005. 12. 7. (수)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업무전략기획팀

## 업무전략기획팀 6차 회의

1. 회의 일시 : 2005. 12. 7. 11:00 ~ 12:00(회의 후 오찬)
2. 회의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2층 회의실
3. 참석 대상
  - 팀 장 : 박찬운 정책국장
  - 외부위원(5명) : 조효제, 장주영, 이창수, 배경내 위원
  - 내부팀원(4명) : 심상돈 과장, 사무관 이수연, 임송(간사)

### 4. 회의 안건

- 발전기획단 활동관련 위원회 논의경과 보고
- 업무전략기획팀 초안 검토
  - 초안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
  - ※ 금일 주요 의견에 대해서는, 특위에 팀 초안 제출 전 반영이 가능한 사항은 반영하고, 반영이 어려운 것은 외부위원 의견으로 부기할 예정임
  - 실천계획 항목별 핵심 추진과제 별도 기술 필요여부
- 기타 발전기획단 활동관련 의견

- 붙임 : 1. 전원위원회 상정 안건 2부 및 상임위원회 안건1부.  
2. 인권단체연석회의 발표 성명서 1부.  
3. 업무전략계획 초안

## 안건 1 : 발전기획단 활동관련 위원회 논의경과

- 발전기획단 활동경과 보고 및 특별위원회 구성계획안 전원위 상정(11.14)
- 발전기획단 활동방향 논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개최(11.15)

### ※ 상임위원회 주요결정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발전전략기획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차기 전원위원회에서 구성한다.
-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책소위원장이 맡고, 나머지 특위 위원은 차기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현 발전기획단 해체 여부를 포함하는 특별위원회 운영방식 및 실무 보좌 기구 구성 등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
- 특별위원회 구성 시까지의 발전기획단 활동 결과물은 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 11. 21.로 예정된 “창립 4주년 기념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단, 워크숍의 참석범위와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인권위원은 참석하지 않으며, 사무처가 특별위원회에 상정할 사무처(안)을 작성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한다.)

※ 11. 16.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5개 인권단체로 구성)가 워크숍 불참을 통보하여 옴에 따라 워크숍 개최 취소

-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서 발표(11.25)
-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안 작성과 관련한 상임위원회 논의결과 보고 및 특별위원회 구성(안) 전원위 보고(11.28)

※ 특위 구성: 위원장(최영애 상임위원), 위원(4명: 김호준, 정강자 상임, 김만홍, 신혜수 비상임 위원)

- 제1회 특별위원회 개최(12.14.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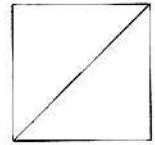
## **안건 2 : 전략계획초안 검토**

- 붙임 “국가인권위원회 발전전략계획 초안” 참조
- 논의사항
  - 초안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
  - 실천계획 항목별 핵심실천 과제 명시 필요여부

## **안건 3 : 기타 발전기획단 활동관련 의견**

붙임 1. 발전기획단활동경과 보고 및 특별위원회 구성계획안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안번호	제05-60호
보 고 연 월 일	2005. 11. 14. (05년 제23차)

보  
고  
안  
건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활동 경과  
및 특별위원회 구성계획(안)

제 출 자	사무총장
제출년월일	2005. 11. 14.

##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활동 경과 및 특별위원회 구성계획(안)

### 1. 발전기획단 활동 경과

- 발전기획단 활동계획 전원위원회 보고('05. 9. 12.)
  -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발전기획단을 설치하고, 산하에 내부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3개 팀(업무전략 기획팀, 위상강화 기획팀, 역량강화 기획팀)을 둠.
  - 팀 구성은 단장이 3개 팀의 팀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3개 팀의 팀장은 각각 박찬운 인권정책국장, 김형완 상담센터 소장, 나영희 교육협력국장으로 함.
  - 발전기획단 활동시한은 2005. 12. 10.까지 약 3개월로 하며, 3개 팀은 각각 위원회 3개년 업무전략, 위원회 위상 강화, 위원회 역량 강화 기획안을 작성함.
- 발전기획단 구성 및 활동개시('05. 9. 13.)
  - 팀 구성 확정(단장 포함 총 25명; 각 팀별 팀장, 간사, 내부팀원 1~3명, 외부위원 5명)
  - ※ 불임 팀 구성 현황 참조



○ 팀별 초안 작성 추진('05. 9. 13. ~ 11. 11.)

- 위원회 내부 팀이 초안을 작성하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팀 전체 회의에서 논의하고 초안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
- 각 팀별 팀 전체회의(5~6회) 및 내부팀 회의(10회 내외) 실시
- 단장은 총 6회의 내부 발전기획단 회의를 통해 각 팀의 활동 사항을 보고받고, 전체 발전기획단 활동을 통할·조정

※ 발전기획단 모든 활동 내용은 내부 인트라넷에 게시하여 모든 직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

○ 현재 향후 논의의 기초로 제공될 초안의 내용을 확정하고, 내용을 풀어 쓰는 작업 진행 중임.

※ 붙임 3개 팀 작성 초안(요약) 참조

## 2. 향후 주요 추진 필요 사항

- 사무처에서 작성한 발전기획 초안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검토·보완
- 검토(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보완
  - 내부 합의형성, 외부 인권관련 전문가 및 단체 의견수렴 등

※ 발전기획단은 발전기획 초안이 마련될 경우, 발전기획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추진동력을 형성하기 위해 외부 인권관련 전문가 및 단체들과의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준비를 진행해 오고 있음. (붙임 워크숍 개요 참조)

- 발전기획 최종안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논의 및 성안

### 3.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구성 제안

#### 가. 제안 이유

- 지금까지 사무처가 위원회 차원의 논의의 기초로 제공될 초안을 작성하여 왔음.
- 이제 초안이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에 따라, 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 나. 특별위원회의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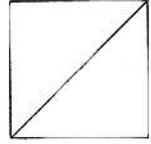
- 특별위원회는 사무처에서 작성한 발전기획 초안을 검토·보완하여 전원위원회에 회부함.
- 현 발전기획단은 특별위원회의 실무를 보좌함.

#### 다. 특별위원회 구성 방법

-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정책소위원장이 특위 위원장을 맡고 관련 규정에 따라 특위 위원장을 포함한 3~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함.

붙임 2. 상임위원회 안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안번호	제05-05호
보 고	2005. 11. 15.
연 월 일	(05년 제22차)

회의안건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건

제 출 자	사무총장
제출년월일	2005. 11. 15.

## 발전기획단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건

### 1. 제23차 전원위원회 결정사항

- 사무처가 제23차 전원위원회에 상정한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활동경과 및 특별위원회 구성계획(안)”에 대하여,
  - 상임위원회가 향후 발전기획단 활동 추진방향을 정해서 다음 전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2. 발전기획단 활동 및 전원위원회 논의 경과

#### 가. 전원위 상정안건 주요내용

- 사무처는 '05. 9. 12. 전원위에 발전기획단 활동계획을 보고하고, 발전기획안 초안 작성 작업을 추진하여 왔음.
- 초안이 작성됨에 따라 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므로, 정책소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
- 덧붙여, 11.21. 개최 예정으로 추진해오던, “창립 4주년 기념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준비사항에 대해서도 보고

## 나. 전원위원회 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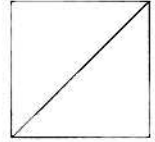
- 제23차 전원위원회는, 상정안건에 대하여 ① “상정된 바와 같은 내용으로 위원회 발전기획안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사전 의결이 없었음” ② “특위 구성은, 실무적 차원에서 논의될 사항이므로 위원회의 사전 의결 없이 추진되어 온 발전기획단 활동을 위원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관한 입장정리가 된 후에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 ③ “실무차원에서 만들어진 안에 대하여 위원회 차원의 검토 없이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등의 이유로
- 상임위원회에서 발전기획안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향후 추진방향을 정해서 다음 전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3. 논의사항

- 지금까지의 발전기획단 활동에 대한 처리방안
- 발전기획단 향후 추진방향(특별위원회 구성 등)
- 다음주(11.21., 월)로 예정된 “창립 4주년 기념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개최에 관한 의견
- 기타 발전기획단 활동과 관련된 사항

붙임 3. 상임위원회 논의결과 보고 및 특별위원회 구성(안)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안번호	제05-62호	보 고 안 건
보 고 연 월 일	2005. 11. 28. (05년 제24차)	

국가인권위원회 발전전략기획안 작성과 관련한  
상임위원회 논의결과 보고

제 출 자	사무총장
제출년월일	2005. 11. 28.

## 국가인권위원회 발전전략기획안 작성과 관련한 상임위원회 논의결과 보고

### 1. 상임위원회 개최 이유

- 사무처가 제23차 전원위원회(11. 14. 개최)에 상정한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활동경과 및 특별위원회 구성계획(안)”에 대하여,
- 상임위원회가 향후 발전기획단 활동 추진방향을 정해서 다음 전원위원회에 보고토록 결정함에 따라, 11. 15. 제22차 상임위원회 개최

### 2. 상임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05. 11. 15.(화) 17:00~17:50
- 장 소 : 전원위원회 회의실
- 참석자 : 위원장, 상임위원(3명), 사무총장, 발전기획단 3개 팀장 및 간사
- 안 건
  - 발전기획단 향후 추진방향(특별위원회 구성 등)
  - 11. 21. 예정된 “창립4주년 기념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개최에 관한 사항
  - 기타 발전기획단 활동과 관련한 사항

### 3. 상임위원회 결정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발전전략기획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차기 전원위원회에서 구성한다.
  -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책소위원장이 맡고, 나머지 특위 위원은 차기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현 발전기획단 해체 여부를 포함하는 특별위원회 운영방식 및 실무 보좌기구 구성 등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
  - 특별위원회 구성 시까지의 발전기획단 활동 결과물은 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 11. 21.로 예정된 “창립 4주년 기념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단, 워크숍의 참석범위와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인권위원은 참석하지 않으며, 사무처가 특별위원회에 상정할 사무처(안)을 작성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한다.)
- ※ 11. 16.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5개 인권단체로 구성)가 워크숍 불참을 통보하여 옴에 따라 워크숍 개최 취소

### 4. 논의 사항

-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상임위는 특위 위원장을 정책소위원장이 맡고 나머지 특위 위원은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음



## 붙임 4. 인권단체연석회의 발표 성명서

[성명] 인권위 4주년 기념 민간초청 워크숍 무산에 부처

### 누가 인권위 발전에 발목을 잡는가?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4주년! 2기 인권위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되어 간다. 인권위가 모든 종류의 인권침해와 차별에 분노하며, 권력과 재력의 뒤흔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낙후된 인권상황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인권지킴이로서의 자기 길을 뚝심 있게 걸어가길, 우리 인권단체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바라고 있다.

그래서 인권단체들은 2기 인권위가 업무를 시작하면서 밝힌 3대 운영기조, 즉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인권교육과 정책권고의 예방활동 △인권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에 대해 동감했으며, 아직까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긴 하지만 인권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권단체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필수화하고 있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인권단체들은 지금까지 인권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3년간의 업무전략을 기획하기 위해 지난 9월 인권단체 활동가 및 개인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의 논의에 주목한다. 또한 이 논의를 발전기획단 내부로 국한하지 않고 외부의 관심있는 인권단체들에게로까지 확장시키기 위해 '민간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워크숍'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높은 점수를 준다.

이는 인권위 업무 자체에 대해 기획단계에서부터 인권단체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최초의 시도로서, 이를 계기로 인권단체와의 협력관계가 질적으로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권위원, 인권위 직원, 인권단체 활동가 및 개인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권위가 스스로를 낮추고 앞으로는 인권단체들의 경험과 의견을 존중해 인권신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난 14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원들은 2달이 넘게 진행된 발전기획단 논의의 성과를 무시하고, 발전기획단 존재 자체에 대해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겠다고 의결했다. 다음날 상임 인권위원들은 민간초청 워크숍을 사무처 차원의 행사로 격하하고 여기에 인권위원들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애초 민간초청 워크숍은 인권위 4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될 예정이었다.

인권위원들은 발전기획단의 위상과 내용이 애초 자신들이 이해한 것과 다르고, 인권위의 중기전략 수립에 대한 전원위원회의 의결이 없었다며 자신들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기획단의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부의 문제를 이유로 외부위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마련한 발전기획안(초안)을 헌신짝 취급하는 것은 외부 위원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자세로서, 인권위의 공신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태도다. 특히 발전기획단 논의를 2달이 넘게 조용히 지켜보다가 뒤늦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전기획단 논의를 원천 무효화한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힘들다.

이런 결정 속에서는 자신의 알량한 권위만을 내세우는 인권위원만 있을 뿐, 인권신장을 위해 대승적으로 고민하고 인권단체와 협력하려는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다. 인권위원들은 지금까지 별다른 전략적 고민과 평가 없이 수행되어 오고 있는 인권위 업무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반성하고도 성찰하고 있는 것인가? 민간초청 워크숍에는 아예 참여를 하지 않겠다니, 인권단체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기 싫지 않은 다음에야, 어떻게 이런 결정을 그것도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이에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원들의 가담찮은 결정에 대해 분개하며, 이 과정에서 민간초청 워크숍이 무산된 데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의 자리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향후 인권위와 인권단체와의 관계는 또 다시 견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권위원들에게 있음도 분명히 한다.

최근 인권위가 공소시효배제입법에 대해 낸 의견을 보면서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공소시효배제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애초 법안의 내용보다도 더 후퇴하는 의견을 내놓은 것은, 형해만 남은 법논리 뒤에서 인권피해자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한 채 번지르르한 명분만 부여잡고 있는 초라한 인권위의 모습이 틀림없다. 인권현장을 안차게 누비며 번뜩이는 감수성으로 인권피해자들을 대변해야 할 인권위원들의 눈에도, 이 의견의 사각지대는 보이지 않았나 보다.

인권위가 출범한 지 4년이 되었다. 지금까지 인권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중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전략적으로 업무를 기획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인권위 발전기획안이 인권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의 과정 속에서 축복받으며 탄생했을 때, 인권위는 지금까지의 관성을 벗어던지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 속에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원들에게 묻는다. 지금 누가 인권위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지를…….

2005년 11월 25일

###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가협/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킹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4개 인권단체)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전략계획 초안(2006년-2008년)

= 목 차 =

1. 업무전략계획(Strategic Plan) 작성 개요
  - 가. 작성목적
  - 나. 작성과정
2. 위원회의 비전(Vision)
3. 위원회의 사명(Mission)
4. 위원회의 운영원칙(Operational Principles)
5. 2기 위원회의 5대 목표(Goals)
6. 실천계획(Strategies)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 1. 업무전략계획 작성 개요

### 가. 작성 목적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2001. 5. 24.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수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 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sup>1)</sup>"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와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차별적 관행들을 조사하고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그동안 낯설어 보였던 '인권'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 알리고, 이를 통해 위원회의 존재 의의를 사회에 각인시켜왔다.

위원회는 설립 5주년을 맞이하여,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부여받은 위원회의 사명과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향후 3년간의 위원회 활동방향과 각 업무 영역별 실천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 나. 작성 과정

○위원회 발전전략기획안 작성을 위해 발전기획단 구성·운영계획 수립('05.8.30)

- 위원회 내에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발전기획단을 설치하고, 산하에 내부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3개 팀(업무전략 기획팀, 위상강화 기획팀, 역량강화 기획팀)을 둬.
- 팀 구성은 단장이 3개 팀의 팀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3개 팀의 팀장은 각각 박찬운 인권정책국장, 김형완 상담센터 소장, 나영희 교육협력국장으로 함.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 발전기획단 활동시한은 2005. 12. 10.까지 약 3개월로 하며, 3개 팀은 각각 위원회 3개년 업무전략, 위원회 위상 강화, 위원회 역량 강화 기획안을 작성함.

○ 발전기획단 활동계획 전원위원회 보고('05. 9. 12.)

○ 발전기획단 구성 및 활동개시('05. 9. 13.)

- 팀 구성원 확정(단장 포함 총 27명)

팀	이름		소속	비고
업무전략 기획팀 (10명)	팀장	박찬운	인권정책국장	
	외부 위원 (5명)	김중서	배재대 법학과 교수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장주영	변호사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실무팀 (4명)	심상돈	인권침해조사1과장	
		이수연	차별조사2과	
		강명숙	인권교육담당관실	
		임 송	정책총괄과	간사
위상강화 기획팀 (8명)	팀장	김형완	인권상담센터 소장	
	외부 위원 (5명)	임지봉	건국대 법학과 교수(헌법학)	
		하승수	변호사	
		송원찬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이재명	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	
		서경석	인하대학교 교수	
	실무팀 (2명)	김성준	법무담당관	
		김정린	인권상담센터	간사
역량강화 기획팀 (8명)	팀장	나영희	교육협력국장	
	외부 위원 (5명)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이대훈	성공회대 연구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	
		정경수	순천대 법학과 교수	
		최희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해외정보실장	
	실무팀 (2명)	심민석	자료실장	
		박숙미	전문위원	간사

○ 팀별 초안 작성 추진('05. 9. 13. ~ 11. 11.)

- 위원회 내부 팀이 초안을 작성하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팀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초안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

- 각 팀별 팀 전체회의(5~7회) 및 내부팀 회의(10회 내외) 실시

- 단장은 총 6회의 내부 발전기획단 회의를 통해 각 팀의 활동 사항을 보고 받고, 전체 발전기획단 활동을 통할·조정

※ 발전기획단 모든 활동 내용은 내부 인트라넷에 게시하여 모든 직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

○ 제23차 전원위원회에 발전기획단 활동경과 보고 및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11. 14)

○ 전원위원회 결정에 따라 향후 발전기획단 활동방향 논의를 위한 제22차 상임위원회 개최(11. 16)

○ 제24차 전원위원회에 상임위원회 논의결과 보고

-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11. 28.)

## 2. 위원회의 비전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며 증진되는 사회-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사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sup>2)</sup>”이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며 증진될 것이다.

## 3. 위원회의 사명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 모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명<sup>3)</sup>을 위해 헌신할 것이다.

1.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권력을 감시한다.
1.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실현한다.
1. 인권에 관한 리더십을 발휘한다.

※ 정책국 워크숍에서 차별분야에 대한 위원회 활동을 별도의 위원회 사명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인권에 관한 리더십 발휘’가 NGO 등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 등이 개진됨

## 4. 위원회의 운영원칙(Operational Principles)

독립성(Independence), 전문성(Professionalism), 다양성(Diversity), 투명성(Transparency), 책무성(Accountability), 합리성(Rationality), 예의와 헌신(Courtesy and Commitment)

2) 위원회의 비전은, 위원회 설립 초기부터 슬로건으로 사용하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과 주요국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전의 핵심적 내용-“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며, 증진되는 사회”를 결합하였다.

3) 위원회의 사명은,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본질적 사명과 인권문제를 다루는 다른 국가기구(사법기관 등)나 혹은 NGO 등과 차별화되는 성격으로부터 도출하였다. 국가인권기구의 본질적 사명과 다른 국가기구와 다른 점으로서 “권력에 대한 감시”와 “인권의 원칙과 기준의 실현”을, NGO 등과의 차별적 성격으로부터 “인권에 관한 리더십 발휘”를 추출하였음.

- 가. 독립성 : 위원회는 국가 혹은 사회의 모든 세력 및 위원회 내외의 압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능과 권한을 행사한다.
- 나. 전문성 : 위원회는 위원회의 임무와 목표, 역할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및 기술을 확보하고, 인권의 가치에 헌신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투자하며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편에서 인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한다.
- 다. 다양성 : 위원회는 사회 각 부문으로부터 자격을 갖추고 인권의 가치에 헌신하고자 하는 다양한 인재를 받아들이고, 차이가 존중되는 조직문화를 구현하며, 갈등의 해결방식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지향한다.
- 라. 투명성 :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위원회 활동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인사·재정 운영의 청렴성을 확보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마. 책무성 : 위원회는 위원회의 모든 활동이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인권 보호 및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 바. 합리성 :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조직운영에 있어, 인권적 관점을 유지하되, 항상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에 기초한다.
- 사. 예의와 헌신 : 위원회 구성원은 위원회의 사명과 인권의 가치를 내재화함으로써 인권실현을 위해 헌신하고, 조직의 내·외부 고객에 대하여 항상 예의바른 태도로 신의를 다한다.



## 5. 2기 위원회의 5대 목표(Strategic Goals)

목표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

목표 2.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목표 3. 권리구제의 실효성 및 만족도 제고

목표 4. 인권가치의 보편화를 위한 체계적 인권교육 및 홍보

목표 5. 위원회 위상 및 역량 강화

### 목표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

위원회는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외국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위원회의 주된 관심 영역이 되어야 하며, 위원회가 보호해야 할 이들의 권리에는 이들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제 권리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이들이 처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들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호,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법령·제도·정책 및 관행의 개선, 이들이 제기한 차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제한된 자원으로 광범위한 인권이슈에 관여해야만 했던 설립 초기의 위원회가 이 분야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하게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때론 위원회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못한 채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역량부족, 제도상의 한계

등으로 권리보호가 불완전한 수준에 머무르기도 하였다.

제2기 위원회는 이 분야에 대한 위원회의 활동을 종합적인 계획하게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차별시정 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상담 및 지원체계 구축”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한 기반 구축에 주력하고, 한편으로는 이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권영역 확장을 위한 연구역량의 강화를 기반으로 이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시행하고자 한다.

## 목표 2.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원회가 추구하는 인권이 국내법에서 보호하는 범위를 넘어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해야 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우리가 가입한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이행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의 적극적 수용이 인권보호를 위한 추가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존의 국내법적 기준 하에서 적절한 보호를 제공받지 못하던 집단 및 개인에 대해 보호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위원회는 아직 국내의 많은 인권관련 법령·제도·정책 및 관행이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원회는 향후 3년 동안 국제적 수준의 인권 제도 및 관행의 구축을 위해,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적용을 위한 기반 구축” 및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내법 정비”에 주력하고 아울러 “인권현안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목표 3. 권리구제의 실효성 및 만족도 제고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하여 조사·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위원회의 조사·구제 활동은 인권침해 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위원회가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인권침해 행위에 내포된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위원회는 그동안 이 분야의 활동을 위해 위원회 역량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 왔으며, 이는 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타당한 것이었다고 판단한다. 다만, 과거 4년 동안의 위원회 활동의 결과, 이 분야에 대한 위원회 기능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이를 위해 제2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목표로 이 분야의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보다 다양화되는 조사·구제 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체계를

확립한다. 둘째, 진정한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는 인권친화적인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인권침해 예방활동 및 현장성을 강화한다.

#### 목표 4. 인권가치의 보편화를 위한 체계적인 인권교육 및 홍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는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과 홍보가 위원회의 주요 사명 중에 하나임을 밝히고 있다.

위원회는 인권문화를 확산하고 사회 구성원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첩경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은 비단 인권교육이나 홍보 활동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모든 활동 속에 내포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사회 구성원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체계적인 인권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제2기 위원회는 체계적인 인권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먼저 “인권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을 위한 협의체 구성, 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연구기반 조성 등을 추진한다. 둘째,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포함, 공공부문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등 다양한 인권교육과정을 구축·시행한다. 셋째, 위원회 차원의 전방위적 홍보전략 계획 수립·실시 등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기능을 강화한다.

## 목표 5. 위원회 위상 및 역량 강화

위원회는 지난 3년간 위헌의 시비 속에서도 파리원칙이 천명한 국가인권기구의 정체성인 무소속·독립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행정부 내에서는 전례가 없던 무소속 독립기관으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식된 측면이 있지만, 대국민 위원회의 위상은 여전히 불명확하며 위원회의 독립성은 행정부를 비롯한 외부기관의 지적과 비난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인권문제를 적극적·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믿음직한 대안적 권리구제기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회적 토대(법, 제도, 정책 등) 발전을 이끄는 기관, 인권 영역에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능력 있는 인권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향후 3년간 이에 필요한 위원회의 위상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1.

위원

악지

회 사

투입

역량

## 7. 실천계획(Strategies)

### 목표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

#### 1.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발

- 1.1.1. 사회권 상황실태조사와 그 활용
- 1.1.2. 인권영역확장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
- 1.1.3. 핵심 사회권 영역에 대한 정책개발

#### 1.2. 차별시정 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1.2.1. 차별금지법 제정
- 1.2.2. 인권위법상 차별 사유별/영역별 판단기준 정립
- 1.2.3. 조정기능 활성화 등 차별 피해자 구제방법의 다각화

#### 1.3. 소수자 및 약자를 위한 상담 및 지원체계 구축

- 1.3.1.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체계 구축
- 1.3.2. 소송지원 체계 구축
- 1.3.3. 사유별/영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세부목표

#### 1.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발

위원회 활동이 논리적인 기반과 사회적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권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는 그동안 위원회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되지 못한 분야이다. 위원회는 향후 3년간 사회권 보호를 위한 조사·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몇몇 핵심 사회권 영역에 대한 정책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 실천계획

### 1.1.1. 인권상황 실태조사와 그 활용

인권위법에 의해 위원회에 위임된 인권상황 실태조사 기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유효하다. 사회의 그늘에 가려진 소외계층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세상에 알림으로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특정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인권상의 문제점과 그 것들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들을 제공한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수행된 조사·연구는 그 것들에 기초하여 개발된 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인 설득력과 자신감을 제공할 것이다.

위원회는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유념하고자 한다. 첫째는 향후 3년간 사회권 분야의 인권상황실태조사에 주력한다. 둘째, 실태조사의 결과가 정책 개발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하에 실시한다. 셋째, 사전에 설정된 정책개발의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 분야를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실태조사의 결과가 위원회 내부의 역량으로 축적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이 전략기획에 기초하여 연간 업무계획 수립시 해당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실시한다.

## 세상

### 1.1.2. 인권영역 확장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

위원회는 지난 4년 동안 자유권 분야의 인권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말은 흔히 제2세대 인권으로 일컬어지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나

발전권, 환경권 등과 같은 제3세대 인권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연구 및 개입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권논의에서 흔히 언급되는 바와 같이 인권은 보편적이고 불가분한 것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호는 위원회가 활동해야 할 인권의 한 분야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인권의 영역, 즉 위원회가 관여하는 활동범위를 제2세대 인권 및 제3세대 인권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향후 3년간 인권영역 확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위원회의 노력은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내에서 이들 권리의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활동들을 모색하는 것이며, 특히, 이들 권리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현실에서 이행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들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 1.1.3. 핵심 사회권 영역에 대한 정책개발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역량의 강화는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개입이 필요한 분야를 식별하고 그 분야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으로 연결될 것이다. 하지만 제한된 자원을 가진 위원회로서 일시적으로 모든 분야에 개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위원회는 사회권 영역에 대한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 위원회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입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 세부목표

### 1.2. 차별시정 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이들에 대한 차별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겠지만, 한편으로는 차별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위원회가 이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위원회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진정이 제기되었을 때 그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결정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한편으로는 위원회 조사관들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사건을 다룸에 있어, 인권침해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정기능 활성화 등 보다 다양한 피해자 구제방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 1.2

### 실천계획

#### 1.2.1. 차별금지법 제정

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제 그 노력의 결과로 법 초안이 완성단계에 있다. 이 초안은 사회 구성원의 차별의식을 개선하고, 차별행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많은 의미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이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기를 희망하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1.2.2. 인권위법상 차별 사유별/영역별 판단기준 정립

인권위법 제2조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등 19개 항목 등을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차별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결정예가 많이 축적되지 않은 위원회로서 제기된 특정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에 관여하는 사람의 신념이나 가치관, 결정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인권이 갖는 추론적인 성격에 비추어 반드시 잘 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위원회는 위원회가 판단을 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판단기준들을 사전에 설정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최대한 객관화되고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권위법상 차별 사유별/영역별 판단기준을 정립하고자 한다.

### 1.2.3. 조정기능 활성화 등 차별 피해자 구제방법의 다각화

인권위법 제42조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지금까지 이 조정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이는 위원회의 조사·구제 활동이 주로 조사중심의 분쟁해결방식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진정 사건 등을 다룸에 있어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조정기능 등 관련법이 허용하는 다양한 방법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방법 들을 개발·적용하고자 한다.

## 세부목표

### 1.3. 상담 및 지원체계 구축

위원회가 사회적 발언권이 약한 사람들의 고충을 듣고 그에 따라 적절히 반응하는 것은 위원회의 본질적 사명 중에 하나이다. 위원회는 그동안 인권위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 들(예: 진정함 설치 및 면전진정제도 등)을 활용하여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많은 분야(예: 구급시설, 정신보건시설 등)에 접근하여 성과들을 일궈왔다. 하지만 아직도 위원회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분야들이 존재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그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이미 많은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인권현장에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례의 경우,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하여 법적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가져올 사회적 효과에도 주목 할 것이다.

## 실천계획

### 1.3.1. 소수자 및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상담 체계 구축

권리구제 접근성이 취약한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인권순회상담버스 운영 및 인권현장 상담사업 등을 통해 찾아가는 인권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취약계층에 적합한 상담기법을 개발, 실시하도록 한다.

### 1.3.2. 사유별/영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위원회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인권분야에서 활동하

고 있는 다른 많은 기관/단체/개인들과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협력관계의 일환으로 인권침해 사유별/영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모니터링 및 지원을 위한 소통경로로 활용할 계획이다.

### 1.3.3. 소수자 및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소송지원 체계 구축

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사회 구성원의 인권의식을 제고하는데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을 선별하여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소송을 수행하는데 위원회가 도움을 줌으로써 차별행위를 방지를 위한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가 차별행위 피해자의 소송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 목표 2.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 21.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적용을 위한 기반 구축

21.1. 정부의 인권NAP의 수립과 그 이행과정의 모니터링 및 적극적 자문

21.2.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협의 및 제도개선

21.3. 인권침해 가능 기관의 관행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 22. 인권현안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22.1. 인권 현안 발굴 체계 확립

22.2. 정책개발 및 대응능력 제고

22.3. 주요재판 및 입법에 대한 적극적 의견개진

### 23.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내법 정비

23.1. 주요 국제 인권논의에의 적극 참여

23.2. 국제인권기준에 저촉되는 국내법 실태조사

23.3. 국내법 정비를 위한 연구개발 체제 구축

## 세부목표

### 21.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적용을 위한 기반 구축

위원회는 우리가 가입한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이행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의 적극적 수용이 우리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첩경임을 인식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그 기반구축을 업무의 주요 목표로 삼아 매진하고자 한다.

## 실천계획